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1.~11. 10.)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진하여 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①·② (생략) <u><신 설></u>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진하여 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하지 아니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997